(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2025년 제3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과학기술기반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고등교육 진흥을 전담하는 부산광역시 출연 연구개발(R&D) 전문 기관으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5년 11월 6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 인원	주요 수행업무
육아휴직 대체	연구사업 수행지원 (정책기획사업관리)	2명	 연구개발 관련 기획 수요, 지역현안 및 정책 발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전략 수립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및 유치 지원 유치 확정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전략 수립 및 후속 관리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사항	 학력·성별·전공·어학 제한 없음 우리 원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우리 원의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 의무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충족여부 판단
자격사항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취득 예정자(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965년 11월 21일 이전 출생자 응시 불가

나.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 부여(만점의 10%)
유의사항	 우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함 증명서 촬영본 및 캡처화면 등 증명서 이외의 증빙 제출시 불인정함

*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 3항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원점수로 합격자를 경정하되, 가점은 합격 순위에만 영향).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채용절차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채용절차 및 일정

구 분	채용일정	합격자 발표
채용공고	'25.11.6.(목) ~ '25.11.21.(금)	-
응시원서 접수	'25.11.6.(목) ~ '25.11.21.(금) 18:00까지	-
서류전형(1차)	'25.12.2.(화)	'25.12.3.(수)
면접시험(2차)	'25.12.11.(목)	'25.12.15.(월)
채용서류 제출 및 검증, 결격사유 조희	~ '25.12.22.(월)	_
최종 합격자 발표	'25.12.23.(화)	'26.1.2.(금)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나. 응시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5.11.6.(목) ~ '25.11.21.(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bistep.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방문·우편·팩스·E-mail 접수 불가 접수마감 이후 제출 및 수정 불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 시험기일을 변경하여 재공고(연장공고)할 수 있음

전형단계		평가내용 및 기준
1차 전형	서류전형 (5배수 선발)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의 구비 및 불성실 작성* 여부 등 형식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부 판정 *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미달(항목별 200자 미만), 동일·유사·무의미한 단어·문장의 연속·반복 응시인원이 채용예정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 * ①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20), ②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30), ③직무적합성 및 전문성·잠재역량(20), ④자기소개서의 우수성(30)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하고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2차 전형	면접시험 (1배수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 * ①직무적합성 및 조직적합도(20),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20),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인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전형단계	평가내용 및 기준
공통사항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로베이스 (허들식 채용)방식이며,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 각 응시자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합격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가 합격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인원수만큼만 합격자로 선발
예비합격자 운영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에 종합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 선발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제출서류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공 통	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 시 제출 (온라인 제출)	해당자	 학위 논문(석·박사) 요약서(A4 3매 이내/한글) 연구실적목록 및 증빙자료(논문표지, 초록, 특허등록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시 출신학교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공 통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면접시험 합격 후 제출	해당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면허) ○ 직무관련 교육사항 증명서 ○ 각종 대회 수상·상훈 등 증빙자료 사본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6 임용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구분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육아휴직대체	연구사업 수행지원 (정책기획·사업관리)	2명	임용일로부터 ~'27.8.9.	정책연구본부

※ 본 기간제 직원 채용 대상 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무조건: 1일 8시간(09:00~18:00), 1주 40시간(월~금) ※ 선택적 근로 시간제 이용 가능
- 근 무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13/17층(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 보 수: 월 2,750,000원
 - * 월 보수는 세전금액이며, 제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리후생: 4대보험, 선택적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연 1회) 등
-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의 규정에 따름
 - * 우리 원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경영공시 규정집 참고

블라인드 채용관련 안내

- 본 채용공고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제출서류 상에는 사진, 성별, 연령,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사실을 언급할 경우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8 기타사항

- 진행 중인 채용공고 건에 대해 하나의 채용공고에 하나의 채용예정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채용공고 및 채용예정분야별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연장공고)를 할 경우에 최초 공고시 접수된 응시원서를 포함하여 채용전형 진행
- 최종 합격자는 임용 즉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에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 상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메일(recruit@bistep.re.kr)로 제출
 -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원에서 부담함
 - * 단,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접수하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메일(recruit@bistep.re.kr)로 제출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051-795-5085, ⊠ recruit@bistep.re.kr)로 문의 바랍니다.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또는 기피중인 자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 자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